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원가항목(PS) 설계반영 부적정

기 관 명 광주광역시

내 용

광주광역시 ○○○○○○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총사업비의 60%를 지원 받아 2014. 12. 3. 광주광역시 북구 ○○○○○○ ○○-○(○○동)에 있는 ○○○○(주)(대표자 ○○○)와 2개사¹⁾와 ‘○○○ 고향의 강 조성사업’을 총 공사부기금액 11,008,829,900원²⁾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2. 10. 착공하여 2018. 11. 23. 준공 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³⁾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,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,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, 2017.

1) 충청북도 ○○군 ○○읍 ○○○길 00-0 (주)○○ 대표자 ○○○, 충청북도 청주시 ○○구 ○○○○ 000 번길 00(○○동) 대표자 ○○○

2) 2017. 1. 11. 총 공사부기금액 12,811,949,000원으로 최종 변경계약 됨

3) P.S항목(Provisional sum : 잠정금액)

1. 23.)」 제13장 「공사계약일반조건」 제6절(공사설계의 변경)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·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, 지질,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, 새로운 기술·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,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‘○○○ 고향의 강 조성사업’의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에도 없어 시공할 물량이 없는 사후 원가검토 공종인 ‘원가항목(PS)’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어야 하는데도, 시공할 물량이 없고 구체적인 사용계획도 없는 사후 원가검토 공종인 ‘원가항목(PS)⁴⁾’을 PS(잠정금액) 방식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 539,000,000원 상당이 부적정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.

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

[시정] 공사기간 중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는 원가항목(PS)를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 539,000,000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.

4) 규격은 ‘민원(포장, 배수공)’으로 되어 있음